

과징금 산정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2호가목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연간매출액은 전년도의 1년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매출액을 환산한다.

나. 연간매출액의 산출이 곤란한 냉동제조자(냉동 또는 냉장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고압가스저장자의 경우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제2호나목에 따라 부과한다.

2. 과징금 산정기준

가.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 기준

등급	연간매출액(단위: 원)	사업정지·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단위: 천원)
1	1억 이하	30
2	1억 초과 ~ 3억 이하	70
3	3억 초과 ~ 5억 이하	120
4	5억 초과 ~ 7억 이하	160
5	7억 초과 ~ 10억 이하	200
6	10억 초과 ~ 13억 이하	240
7	13억 초과 ~ 16억 이하	280
8	16억 초과 ~ 20억 이하	320
9	20억 초과 ~ 25억 이하	360
10	25억 초과 ~ 30억 이하	400
11	30억 초과 ~ 40억 이하	440
12	40억 초과 ~ 50억 이하	480
13	50억 초과 ~ 70억 이하	520
14	70억 초과 ~ 100억 이하	560
15	100억 초과 ~ 150억 이하	600
16	150억 초과 ~ 200억 이하	640
17	200억 초과 ~ 300억 이하	680
18	300억 초과 ~ 400억 이하	720
19	400억 초과 ~ 500억 이하	760
20	500억 초과	800

나.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규모를 기준으로 한 과징금 기준

종별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규모		사업정지·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 (단위: 천원)
	냉동제조능력	고압가스저장능력	
1종	50톤 이하	30톤 이하	30
2종	50톤 초과 ~ 100톤 이하	30톤 초과 ~ 100톤 이하	100
3종	100톤 초과 ~ 300톤 이하	100톤 초과 ~ 500톤 이하	400
4종	300톤 초과 ~ 500톤 이하	500톤 초과 ~ 1,000톤 이하	600
5종	500톤 초과	1,000톤 초과	800

비고

1.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를 1톤으로 한다.
2.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냉동 제조능력에 2를 곱한 수치를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냉동제조능력으로 한다.